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34 발의연월일: 2020. 10. 7.

발 의 자: 강선우·최종윤·김성주

이수진 · 강병원 · 박홍근

신정훈 • 권칠승 • 홍성국

김정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후조리도우미가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거나 쿠션에 던지듯 올려놓는 등의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법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 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하며 산후조리도우미로 활 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 제15조의19 신설).

법률 제 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8제2항 중 "자격 · 신청"을 "신청"으로 한다.

제15조의19부터 제15조의21까지를 각각 제15조의20부터 제15조의22까지로 하고, 제15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①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정신질환자
-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 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19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 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
원) ① (생 략)	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u>자격・신</u>	② <u>신청</u>
<u>청</u> 방법·절차, 지원 기준·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u> <신 설></u>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
	<u>격</u>) ① 산후조리도우미는 「사
	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
	속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
	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
	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
	는 피한정후견인
	<u>2. 정신질환자</u>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 중독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현 행 제15조의19와 같음)
- 제15조의21(산후조리 관련 실태 조사) (현행 제15조의20과 같 음)

<u>제15조의22</u>(모자동실 운영) (현행 제15조의21과 같음)

<u>제15조의19</u>(산후조리원 평가) (생략)

<u>제15조의20</u>(산후조리 관련 실태 조사) (생 략)

<u>제15조의21</u>(모자동실 운영) (생략)